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8. 17 선고 2021가단95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조합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17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2.
2. 26. 접수 제1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’은 ‘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’으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